

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1994. 2. 24.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교육사회위원회

○ 제출일자 : 1994년 2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1994년 2월 15일

3. 제안이유

○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청원학생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함.

○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(대통령령 제14042호, '93.12.31.)에 의거 "교육행정"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직급명칭을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'91. 3. 1.자로 폐교된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593번지에 위치한 미원국민학교 운암분교장을 학생야영장으로 전용코자 청원학생야영장을 설치함 (안 별표 1)

○ 직급명칭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교육행정사무관"으로 함 (안 제5조)

5. 검토 의견

○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바,

1991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미원국민학교 운암분교장을 청소년 야영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은, 폐교된 학교를 재활용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야영·수련활동을 통한 심신수련과 호연지기 함양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,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됨으로써 바람직하며,

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(대통령령 제14042호, '93.12.31.)에 의거 "교육행정"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직급명칭을 바꾸려는것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: 별 첨